

의안번호	2207242
의 퇴 인	임광현의원
회 답 일	2025.1.22.
추계번호	25E00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 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3항(과세표준의 계산)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상향 조정 - 연 1,500만원 → 2,000만원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제3항(과세표준의 계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현재 연금계좌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연금수령 시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자의 연령에 따라 3~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며,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음
 - 단, 연금소득 지급 시에는 연 수령액에 관계없이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연 수령액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과세방식을 적용받음
 - 개정안은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수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2022년 및 2023년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고, 개정안에 따르면 이 중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된 세액만을 납부하게 됨

[표 1]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2022년 및 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2			2023		
	인원	지급액 ¹⁾	소득세 ²⁾	인원	지급액 ¹⁾	소득세 ²⁾
합계	817,500	4,381,038	246,751	988,354	4,990,269	275,468
1백만 이하	194,717	96,933	4,188	272,162	130,697	5,664
2백만 이하	143,644	218,457	9,897	172,659	262,481	11,877
3백만 이하	119,125	295,985	14,030	143,233	356,609	16,912
4백만 이하	91,328	318,886	15,365	101,650	354,837	17,080
5백만 이하	56,296	249,629	12,224	66,443	295,354	14,518
7백만 이하	62,910	379,659	18,411	68,824	410,375	19,898
1천만 이하	83,654	686,795	33,147	84,906	708,093	34,074
1.2천만 이하	22,209	244,230	11,328	26,770	295,059	13,610
1.5천만 이하	9,277	123,363	5,442	10,579	140,934	6,139
2천만 이하	7,563	131,406	5,769	9,056	157,671	6,741
2천만 초과	26,777	1,635,695	116,950	32,072	1,878,159	128,955

주: 1) 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연금소득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2) 소득세는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4-7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해당 구간 납세자의 종합소득 신고 현황 및 기타소득/종합과세 선택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의 미비로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연금소득 연간 지급액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의 인원 전부가 현재 15% 세율의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약 169억원(=1,577억원×15%-67.4억원)으로 예상
 -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낮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제 세수감소 규모는 종합과세 선택 인원 비중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 신고 현황에 따라 169억원 보다 작을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